



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과
박 영 모

지방세 관련 질의회신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없이 판단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지방세 부과·징수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타워크레인 등록제 시행(' 10.1.1)에 따른 세정운영기준



적용대상

- 본 기준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
 - ① 2007.12.31 이전에 제작·수입된 타워크레인을 취득한 자
 - ② 2009.12.31까지 건설기계 등록을 마친 자
 - ③ 2009.12.31까지 취득·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자



판단기준

- (취득증빙서류 인정범위)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발행의 ‘등록심의필증’은 취득증빙서류로 불인정, 참고자료로만 활용
-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무상취득 계약서, 경락관련서류, 수입필증, 법인장부,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만 인정



<그외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국세신고자료 >

- ①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 취득자, 취득일, 취득가액 확인 가능
- ②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부가가치세법) : 취득내역, 취득가액
- ③ 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소득세법) : 취득일, 취득가액, 내용연수

- (취득시기 판단기준) 증빙자료를 통하여 실제 취득일이 입증되면 그 증명된 실제 취득일을 인정하고, 실제 취득일이 입증되지 않으면 등록일을 취득일로 인정
* 실제 취득일 불분명시 등기일을 취득일로 인정 (대법원 2009두4982 판결)



적용요령

- ◇ 본 요령은 '개인납세자'에 대한 적용기준임
※ 법인은 입증문제 없으므로 현행과 같이 법인장부에 의해 적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취득일을 입증한 경우»

- (취득일) 입증하는 실제 취득일을 기준으로 과세
- (부과제척기간) 제출자료 기초로 부과제척기간(5년) 경과 인정 여부 판단
⇒ 부과제척기간 경과자는 과세 제외
⇒ 부과제척기간 미경과된 자에 대하여는 가산세 면제를 권고
- (과세표준) 신고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여 취득·등록세를 부과하되,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 적용

«증빙자료가 없거나 부족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취득일) 등록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
- (부과제척기간)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인정하지 않음
* 등록일을 취득일로 인정하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가 성립될 수 없음
- (과세표준) 신고가격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 적용(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 행안부 권고사항

- 징수유예 활용
 - 납세자의 세부담이 과중한 경우, '징수유예 등'으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





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자치단체장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의 경우에 6개월(1회 연장 가능)의 범위 안에서 ‘징수유예 등’(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을 할 수 있음 (지방세법 제41조)

○ 가산세 면제

- 자진등록·신고를 유도하여 과세행정을 조기 정상화하기 위해, 가산세 면제 권고
※ 한시적으로 '09.12.31일까지 등록 및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 면제할 것을 권고

【지방세운영과-5206, 2009. 12. 8.】

2. 외투기업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 감면 여부 및 세정운영 기준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한 조세(등록세)감면과 관련하여 법규해석 및 세정운영 기준



판단기준

- 관련 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 제1항
- 쟁점사항
 -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만큼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의 자본금 증자등기 자체에 대한 등록세까지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석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 감면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하여 최초 투자시 감면규정인 같은 법 제121의2를 준용하여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등록·재산세를 외국인투자비율만큼 추가로 감면하겠다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



금 증자등기 자체에 대한 등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증자분에 대한 사업용재산 관한 등기는 감면대상이나, 법인등기(자본·출자액 증가 등기 등)는 제외됨



세정운영 기준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착오감면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0.1 월중 과세예고 후 '10.3월까지* 부과고지토록 조치
 - 다만, 부과액 산정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배제토록 함
 - * '10.3월 이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건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배제 후 조기 부과조치
- 한편,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는 납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징수유예 제도(지방세법 제41조)를 적극 적용하여 기업부담 최소화. 끝.

【지방세운영과-5345, 2009. 12. 17.】

3. 처분된 기부채납용 부동산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내용

도심재개발사업시행자(갑)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도로 및 공원 부지)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등록세를 비과세 받은 후, 사업을 포기하고 기부채납용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일체를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시행자(갑)가 비과세 받은 기부채납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등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지방세법에서 기부채납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취득하여야 할 부동산을 대신 취득하여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직접 기부하는 자에게 조세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이전에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여 국가나 자치단체에 직접 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취득·등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우리 부 질의회신 세정과-39, 2003.5.30. 및 심사결정 행심2000-491, 2000.6.27. 참조)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운영과-5340, 2009. 12. 17.】

4.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여부 및 세정운영 기준



질의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27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지주회사의 적용이 배제되는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대상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기준을 갖추게 되고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 규정을 적용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276조제1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2조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지주회사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의2에서는 지주회사 등의 각종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66조 등에서는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벌금 등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단순한 출자구조를 갖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연쇄도산 감소 등 기업소유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이를 지방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는 기업의 경영권을 한시적으로 확보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투자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항구적 지배목적을 지닌 일반지주회사와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자본시장법에서도 10년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대상인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등을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공정거래법 제1조)을 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경우 동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기준을 갖춤과 동시에 각종 행위제한, 의무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벌금 등에 대한 규제 등을 적용 받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를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27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적용이 배제되는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세정운영 기준

- 시·도에서는 동 법규해석 기준을 시·군·구에 통보하여 지방세 감면배제, 과오





납 환부청구 반려, 기존 착오 감면분 환수 조치 등 세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일반(금융)지주회사와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구분은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기업집단 공개시스템(groupopni.ftc.go.kr) 등을 활용토록 함

【지방세운영과-5351, 2009. 12. 18.】

5. 감면 후 중과사유 발생시 중과 추징세액 산정



질의내용

질의1)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의해 감면받은 후 중과사유 발생한 경우, 중과세액은 감면된 세액의 3배인지(3%) 아니면 일반세율의 3배를 적용한 세액(6%) 인지

질의2)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의해 감면을 받은 후에 중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별도의 추징규정이 없더라도, 중과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미 감면이 확정된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관련규정

- ①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각 일반세율(2%)로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 경감한다
- ②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 용 부동산을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 ③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추징한다





회신내용

가. 질의1) 관련 :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의해 감면받은 후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50조의2 제2항의 규정상, 취득·등록세 과세물건 취득·등기 후에 중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제112조 제3항의 세율(취득세 2%의 3배) 또는 제138조의 세율(등록세 2%의 3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세율(2%)에 3배 중과한 세율(6%)을 적용함이 타당함

나. 질의2) 관련 : 이미 감면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감면규정에서 아무런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취득세 등 중과세 요건을 구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취득세 등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으므로 (대판 2003두9374, '05.9.29 참조)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은 주택 유상거래에 대하여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할 뿐, 감면분에 대한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미 감면받은 취득·등록세액은 중과요건구비를 이유로도 추징할 수 없음

【지방세운영과-5417, 2009. 12. 23.】

6. 영유아보육시설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내용

부동산 소유자인 00교회가 구청으로부터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별도의 임대료를 받고있는 경우 당해부동산을 영유아 보육시설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 00교회가 구립어린이집을 00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 어린이집 위탁운영약정과 별개로 부동산임대차 약정 체결
 - 구청과 00교회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보증금 2.5억)



○ 보육시설위탁계약증 내용

- 대표자 성명 : 00교회 / 보육시설의 장 : 이00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00교회가 당해 영유아 보육시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영유아 보육법 관련규정에 따라 영유아보육시설 위탁운영 신청을 통해 수탁자로 지정 받아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면,

다. 비록 구청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에 대해 영유아보육시설 사용대가를 받더라도, 지방세법상 수익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운영주체(00교회)가 당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한 감면대상이라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결정할 사안입니다.

【지방세운영과-5459, 2009. 12. 26.】

7.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질의내용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를 분양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인 경우 당해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질의





사실관계

- 물류단지 지정일 : 2003.7.14. 00종합유통단지 지정
- 물류단지 준공인가일 : 2008.3.31.
- 물류단지 토지 취득일 : 2008.6.24. 분양 취득
- '09.6.1. 현재 토지사용현황 : 건축물 미착공 나대지 상태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8호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서 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 및 일정규모 이하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7호에서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터미널 및 창고 등(생략)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지방세법 제131조의2 제3항제8호에서 별도합산 대상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물류시설의 개발·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물류단지용 토지로 지정 받은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동법 제2조7호 규정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 실제 사용하여야 하므로,

라. 비록 당해 토지가 물류단지시설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서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이나 사업행위가 없다면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결정할 사안입니다.

【지방세운영과-5458, 2009. 12. 26.】



8. 송전철탑 진입로공사비 취득세등 과세표준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



기존해석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3 규정과 관련하여,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세정-515, 2003.07.18)은 송전철탑 진입로공사는 송전철탑의 취득 가격에서 제외



변경된 해석기준

대법원판례(2009두5350, 2009.9.10.)에서 송전철탑 설치 시 진입도로공사비 등은 당해 과세물건인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 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을 판례의 취지에 따라 검토·조정하여 변경통보함

【지방세운영과-5521, 2009. 12. 29.】

9. 정부출자 법인의 자본금 증자시 등록세 중과여부



질의내용

산업은행금융지주(주)가 정부가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여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가 배제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국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이 '09.10.28일 인적분할방식으로 한국산업은행, 산업은행금융지주(주), 한국정책금융공사로 분할되었고, 인적분



할 방식은 분할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영업재산을 출자 받은 대가로 발행하는 주식이 기존회사의 주주에게 교부되므로 산업은행금융지주(주) 주식은 한국산업은행의 주주인 국가에 100% 귀속되어 산업은행금융지주(주)는 국가가 납입자본금의 100%를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해당됨

나. 아울러 ‘출자’란 회사설립 또는 주식인수를 위해 주주가 자본을 납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출자의 범위는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동산, 부동산, 주식, 채권 등도 포함하고 국가가 ’09.11.24일 주식교환을 통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산업은행 주식을 출자하여 산업은행금융지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국가가 직접 출자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산업은행금융지주(주)는 국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배제 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출자관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지방세운영과-5540, 2009. 12. 31.】

10. 법인균등할주민세 세율 및 과세대상 사업소 판단



질의내용

질의1) 대한지적공사의 법인등기부상 자산이 407원으로 등재 되어있는 경우, 당해 연도 국세청에 신고 된 재무제표(740억원이 자본금 계정에 계상 되어 있음)를 근거로 법인균등할주민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질의2) 00회사가 같은 건물에 있는 00지사, 00영업부, 00센타 등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추징한 경우 별개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보아 과세한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1)에 대하여

○ 지방세법 제172조제1호에서 “균등할”이라 함은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76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500,000원...(중간 생략)...기타법인은 50,000원 등으로 법인의 표준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균등할주민세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각 구간별 세액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바, 여기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적용하고,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은 기타법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때(해석운영매뉴얼 176-1),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법인 정관상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타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 지방세법 제173조제1항에서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172조제6호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44조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입법취지나 과세요건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세목별로 그 법적 기준에 따라 과세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문의 경우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소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할사업소세를 과세하였다면 종업원할사업소세 과세대상 “사업소”는 법인균등할주민세 과세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는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환급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5565, 2009. 12. 31.】



11. 골프장 중과세 여부



질의내용

회원제 골프장과 병설 운영되는 대중제 골프장 내의 「조정지」가 회원제 골프장 코스와의 사이에 위치한 경우 그 조정지를 사실상 회원제골프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및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회원제 골프장과 병설 운영되는 대중제 골프장 내의 「조정지」가 회원제 골프장 코스와의 사이에 위치한 경우 비록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현황이 회원제 골프장 코스의 일부로 사용되는 등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에 공동이용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조정지 전체를 대중제 골프장으로 보아 일반세율만을 적용할 수는 없고, 실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안분 계산하여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세운영과-5411, 2009. 12. 22.】